
정 관

2026. 01. 12

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

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 정관

제정 2026.01.12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은 의료·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기업·기관·단체들이 모여 산·학·연간 활발한 연계와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전주기적 CMC(Chemistry, Manufacturing and Control)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조합은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(이하 "연구조합"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영문으로 Korea CMC Service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(약자: KCMC)라 표기한다.

제3조(사무소)

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,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
제 2장 사 업

제4조(사업)

①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CMC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
2. CMC 서비스 품질 표준 제정 및 인증
3. CMC 관련 공동 연구 및 정부 및 지자체 R&D 사업 공동 수행
4.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
5. CMC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 인력 인증
6.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사업은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로 수행하며,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1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본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.

⑥ 본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.

⑦ 이 연구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주무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조합원과 의료바이오분야 전문가 대상 교육 및 훈련 서비스업
2.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업
3. 중소·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업

제 3장 조 합 원

제5조(조합원의 자격)

①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의 조합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.

②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의 조합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회원 :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
2. 준회원 :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
3. 특별회원 : 이사회가 인정한 의결권 없는 조합원

제6조(가입)

제5조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탈퇴)

①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②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,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권리와 의무)

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 및 선거권을 갖는다.

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씨엠씨서비스산업연구조합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1. 권리 :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른 권리 행사
2. 의무 : 회비 납부, 정관 준수, 사업 참여

제9조(제명)

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제4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3. 제28조에서 정한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4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조합원 지위의 승계)

- 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.

제 4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구성 및 정원)

- ①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1. 이사장 1명
 2. 부이사장 3인 이하
 3.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
 4. 감사 2인 이하
- ② 조합은 임원 외에 명예위원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③ 제3호의 상임이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조합의 조합원임을 요하지 않는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취임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
-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단, 초대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.

⑤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.

제14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,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,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,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, 보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⑤ 감사는 연구조합의 재산상황,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, 그리고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5조(파견 비상근임원)

① 제11조 규정에 따른 임원 이외에 사업분야별로 파견 비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
② 파견 비상근임원은 조합원사 중에서 기술개발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파견 비상근임원 소속 대표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③ 파견 비상근임원은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출근하여 대내외적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④ 조합 사무국은 파견 비상근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5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6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,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
제17조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임시총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.

② 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 및 제14조 제5항에 의거한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5. 조합의 해산 및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제19조(이사회 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
제20조(이사회 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2.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1조(이사회 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
2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3.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, 제명에 관한 사항
4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7.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
8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22조(의결정족수 등)

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정관 변경·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23조(대리인 참석)

총회 및 이사회에는 표결권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
제24조(의사록 작성)

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연구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장 자 산 및 회 계

제25조(회계년도)

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26조(회계의 원칙 및 구분)

- ①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.
- ② 본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목적유지회계”라 한다)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연구과제회계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제27조(재원)

- ① 조합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- 1. 조합원의 회비 등
 - 2. 연구개발분담금 및 정부출연금, 정부보조금, 기타사업수익
 - 3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기타수입금
- ② 매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8조(회비)

-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이 부과하는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특별회비 및 특별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9조(기금조성)

- 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- ② 1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 7장 사무국

제30조(사무국 설치)

-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31조(사무국의 운영)

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과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2조(분과위원회)

① 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2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 회의 결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후 해체한다.
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33조(분과위원회 회의)

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시, 연구조합 업무 필요에 의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4조(협업지원기관)

① 본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연구소, 연구회, 대학 등을 협업지원기관으로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8장 보 칙

제35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

①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.

1. 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조합원 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3. 기타 정당한 사유로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

② 조합의 해산은 총회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③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사무를 처리한다. 청산인은 회계정리, 채권·채무 정리, 재산 환수 등 모든 청산업무를 수행하며,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감독을 받는다.

④ 해산 및 청산종결 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.

제36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

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,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설립인가서
2. 정관
3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
4. 조합원 명부
5. 결산관계 서류
6. 재산목록

- 7. 운영성과표
- 8.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한 문서

제37조(사업계획 등)

- ① 이 연구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 연구조합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주무관청이 이 연구조합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변경신고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- 1. 조합의 목적과 명칭
 - 2. 조합의 임원의 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
 - 3. 조합원의 자격, 가입, 탈퇴 및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- 2. 조합의 대표자 및 이사 등 임원의 변경
 - 3. 조합의 해산 및 청산
- ③ 변경 사항에 대해 민법에 따라 3주 내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, 변경 등기를 마친 후 변경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조합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
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과 같이 기명·날인한다.

2026년 01월 12일

- 발기인** (주)넥스제너(110111-8384151)
(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, 지원동 204호(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 융합소재실용화센터)
대표이사 김수동 (인)
- 발기인** 첨단의료제품품질증연구원(121-82-88430)
(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93, 아너스카이 517호)
원장 이정태 (인)
- 발기인** (주)카이저바이오(135811-0450080)
(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, 지원동 203호)
대표이사 이상래 (인)
- 발기인** 이상목(550228-1023926)
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2403호)
(사)카이저스타트업 (인)
아카데미 상임고문
- 발기인** 서명원(690320-1156015)
(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, 5402동 1904호(자연앤힐스테이트아파트)
(주)넥스제너 전무 (인)
- 발기인** 김영민(731010-1029421)
(경기 평택시 통복로 5 평택역경남아너스빌디아트 101동 2003호)
대웅바이오 연구소장 (인)
- 발기인** 김광일(750105-0123456)
(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, 월드메르디앙 113동 1505호)
(주)경보제약 팀장 (인)
- 발기인** 오성수(690825-0123456)
(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71번길 25, 303동 1101호)
SOONEX 대표 (인)
- 발기인** 한인규(730820-1406311)
(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, 국화우성아파트 505동 505호)
(주)넥스제너 이사 (인)